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851

발의연월일: 2022. 10. 18.

발 의 자:이양수・백종헌・박덕흠

이명수 · 황보승희 · 최영희

박정하 • 홍문표 • 이달곤

안병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의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를 두어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일부 목재펠릿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목재펠릿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목재펠릿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므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민이나 임업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

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을 "제11호는 2022년 12월 31일"로, "제2호"를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	
호의3, <u>제11호 및 제12호는 2</u>	제11호는 2022년 12월 31
<u>022년 12월 31일</u> 까지 공급한	<u>일</u>
것에만 적용하고, <u>제2호</u> , 제3	, <u>제12호는 2025년</u>
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	<u> 적용하며, 제2호</u>
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	
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	
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	
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에만 적용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